부평 SK VIEW 해모로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 -12954호(2022.12.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으로 청약신청 자격을 위반하여 청약 후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철거로 인해 견본주택은 관람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5.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5.29.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5.)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하며, 금회 공급물량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은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 될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후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 전매가 금지 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12월 12일(월)	12월 13일(화)	12월 16일(금)	12월 19일(월) ~ 12월 21일(수)	12월 23일(금) ~ 12월 24일(토)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공고문 9~페이지 참조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 (부개동 145-10) 부평 SK VIEW 해모로 단지내상가 201호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창구, 조합 사무실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 -12954호(2022.12.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부개동 145-10번지) 일원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 25층 17개동 총 1,559세대 중 [특별공급 : 기관추천 1세대, 다자녀가구 2세대, 신혼부부 3세대, 일반공급 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준공인가 후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계	
민영 주택	2022930021	01	036.0986A	36A	36.0986	16.9415	53.0401	26.5903	79.6304	21.30	3	-	-	1	1	2
		02	036.0986B	36B	36.0986	16.9415	53.0401	26.5903	79.6304	21.30	4	-	-	-	-	4

	03	049.9665	49	49.9665	22.1788	72.1453	36.8054	108.9507	28.97	1	-	-	-	-	1
	04	051.9980	51	51.9980	22.4501	74.4481	38.3018	112.7499	29.89	1	-	-	-	-	1
	05	059.9750A	59A	59.9750	24.4560	84.4310	44.1776	128.6087	33.90	3	-	-	-	-	3
	06	074.6086C	74C	74.6086	24.1555	98.7641	54.9568	153.7208	39.65	4	-	-	1	1	3
	07	084.9825A	84A	84.9825	24.7977	109.7802	62.5982	172.3784	44.08	6	1	2	1	4	2
	08	084.9659B	84B	84.9659	24.9510	109.9169	62.5860	172.5028	44.13	1	-	-	-	-	1
합 계										23	1	2	3	6	1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수	분양금액			1차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입주 시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036.0986A	36A	102-1306	108,790,000	144,210,000	253,000,000	25,300,000	227,700,000
036.0986A	36A	102-1406	108,790,000	144,210,000	253,000,000	25,300,000	227,700,000
036.0986A	36A	102-1407	108,790,000	144,210,000	253,000,000	25,300,000	227,700,000
036.0986B	36B	101-801	107,715,000	142,785,000	250,500,000	25,050,000	225,450,000
036.0986B	36B	101-1008	108,790,000	144,210,000	253,000,000	25,300,000	227,700,000
036.0986B	36B	101-1201	108,790,000	144,210,000	253,000,000	25,300,000	227,700,000
036.0986B	36B	102-308	104,447,000	138,453,000	242,900,000	24,290,000	218,610,000
049.9665	49	103-701	148,092,000	196,308,000	344,400,000	34,440,000	309,960,000
051.9980	51	103-1604	160,906,000	213,294,000	374,200,000	37,420,000	336,780,000
059.9750A	59A	111-701	186,233,000	246,867,000	433,100,000	43,310,000	389,790,000
059.9750A	59A	117-304	180,557,000	239,343,000	419,900,000	41,990,000	377,910,000
059.9750A	59A	117-306	180,557,000	239,343,000	419,900,000	41,990,000	377,910,000
074.6086C	74C	114-303	208,077,000	275,823,000	483,900,000	48,390,000	435,510,000
074.6086C	74C	114-1803	216,763,000	287,337,000	504,100,000	50,410,000	453,690,000
074.6086C	74C	115-404	212,420,000	281,580,000	494,000,000	49,400,000	444,600,000
074.6086C	74C	115-1104	216,763,000	287,337,000	504,100,000	50,410,000	453,690,000
084.9825A	84A	107-402	237,317,000	314,583,000	551,900,000	55,190,000	496,710,000
084.9825A	84A	109-1601	242,133,000	320,967,000	563,100,000	56,310,000	506,790,000
084.9825A	84A	113-403	237,317,000	314,583,000	551,900,000	55,190,000	496,710,000
084.9825A	84A	113-404	237,317,000	314,583,000	551,900,000	55,190,000	496,710,000
084.9825A	84A	116-1904	242,133,000	320,967,000	563,100,000	56,310,000	506,790,000
084.9825A	84A	116-2201	244,584,000	324,216,000	568,800,000	56,880,000	511,920,000
084.9659B	84B	114-1904	245,831,000	325,869,000	571,700,000	57,170,000	514,530,000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자격제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일 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공통자격요건 및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이하	~8,692,508원	~10,081,133원	~10,256,501원	~10,891,755원	~11,527,009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2022.12.12.(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공급		2022.12.13.(화)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일시: 2022.12.16.(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2.12.23.(금)~2022.12.24.(토) (10:00~16:00) • 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 (부개동 145-10) 부평 SK VIEW 해모로 단지내상가 201호
일반공급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2.16 (금) ~ 2022.12.25 (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2.16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조합 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일	2022.12.19.(월) ~ 2022.12.21.(수) 10:00 ~ 16:00 (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 (부개동 145-10) 부평 SK VIEW 해모로 단지내상가 201호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입주자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	조합 사무실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조합 사무실 비치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본인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예: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	해외체류 관련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미혼,이혼,사별,단독세대,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자녀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심진단서 제출(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조합 사무실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조합사무실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당사 조합사무실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합니다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조합 사무실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입주자 서약서	본인	조합 사무실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조합 사무실 비치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본인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예: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	해외체류 관련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미혼,이혼,사별,단독세대,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 전부증명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청약자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합니다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 에 한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조합 사무실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표> 소득입증 제출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동일 호봉자 서류 제출 불가 시 근로계약서 제출)	①,②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금년도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법인의 재무제표(필요 시 : 원천징수 이행 확인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①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접수장소
기타(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5.)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신청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1억원~10억원 이하 15만원) 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제3자 대리계약 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조합 사무실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 잔금	우리은행	1005-103-947681	부개서초교북측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주택형	선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36A, 36B	확장형	3,500,000	350,000	3,150,000
49	확장형	13,000,000	1,300,000	11,700,000
51	확장형	9,000,000	900,000	8,100,000
59A	확장형	11,000,000	1,100,000	9,900,000
74C	확장형	12,000,000	1,200,000	10,800,000
84A	확장형	13,400,000	1,340,000	12,060,000
84B	확장형	14,000,000	1,400,000	12,600,00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옵션 추가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36B, 51 (전동 빨래 건조대) / 49 (전동 빨래 건조대, 시스템 선반) / 59A, 74C, 84A, 84B (전동 빨래 건조대, 전기오븐)
※ 확장 선택형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전기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 공사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발코니 미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규격, 천장 기기류(전등, 환기구, 스프링클러 등) 및 스위치 등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미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

(단위 : 원)

타입	선택1		선택2	
	공급 금액	실내기 설치 위치	공급 금액	실내기 설치 위치
36A, 36B	3,500,000	거실, 침실1	-	-

49	3,800,000		4,500,000	거실, 침실1, 침실2
51, 59A, 74C	3,800,000		6,20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4A	4,000,000		6,500,000	
84B	4,000,000		7,75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기본)
			6,50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다이닝 강화형)

- 현재 공사 완료되어 옵션 추가 및 변경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 및 침실1에 골조 매립 시공하는 냉매배관은 제외되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골조 매립 냉매배관 시공 공사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안방, 벽걸이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 공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조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을 취소할 경우 기본 제공 품목인 거실(스탠드형) 및 침실1(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의 시공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감지기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조합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1.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단위 : 원)

타입	공급 금액	설치 형태	비고
전체 타입	450,000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현재 공사 완료되어 옵션 추가 및 변경 불가

- 하이브리드 쿡탑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이 가능하며, 유상 옵션 금액은 기존 가스쿡탑 미설치, 소방 법령에 따른 자동식소화기 형식 변경 등의 증감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2.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단위 : 원)

타입	공급금액	설치 형태	비고
74C	1,800,000	주방 상판 및 주방 벽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현재 공사 완료되어 옵션 추가 및 변경 불가

- 엔지니어드스톤의 사양은 Group1(36A. 49, 51, 59A, 59B, 59C), Group2(74A, 74B, 74C), Group3(84A, 84B)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별 추가 옵션 품목 금액

(단위 : 원)

타입	동호수	옵션품목	옵션항목	금액
36A	102-1306	시스템에어컨	A/C_옵션1	3,500,000

36A	102-1406	시스템에어컨	A/C_옵션1	3,500,000
36A	102-1407	-	-	-
36B	101-801	발코니확장		3,500,000
		시스템에어컨	A/C_옵션1	3,500,000
36B	101-1008	발코니확장		3,500,000
		시스템에어컨	A/C_옵션1	3,500,000
36B	101-1201	발코니확장		3,500,000
36B	102-308	발코니확장		3,500,000
		시스템에어컨	A/C_옵션1	3,500,000
49	103-701	발코니확장		13,000,000
		시스템에어컨	A/C_옵션2	4,500,000
51	103-1604	발코니확장		9,000,000
		시스템에어컨	A/C_옵션2	6,200,000
59A	111-701	발코니확장		11,000,000
59A	117-304	발코니확장		11,000,000
59A	117-306	발코니확장		11,000,000
74C	114-303	발코니확장		12,000,000
74C	114-1803	발코니확장		12,000,000
		시스템에어컨	A/C_옵션2	6,200,000
74C	115-404	발코니확장		12,000,000
		시스템에어컨	A/C_옵션2	6,200,000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450,000
		주방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1,800,000
74C	115-1104	발코니확장		12,000,000
84A	107-402	발코니확장		13,400,000
84A	109-1601	발코니확장		13,400,000
		시스템에어컨	A/C_옵션1	4,000,000
84A	113-403	시스템에어컨	A/C_옵션1	4,000,000
84A	113-404	발코니확장		13,400,000
84A	116-1904	발코니확장		13,400,000
	116-2201	시스템에어컨	A/C_옵션1	4,000,000
84B	114-1904	시스템에어컨	A/C_옵션2	7,750,00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 잔금	우리은행	1005-603-955405	에스케이건설(주)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아파트 계약일에 선택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계약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현장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101호 김부평 →"1010101김부평")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V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합니다.
- 당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4년 12월 29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건축심의 신청 및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 평가결과 담보 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 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 금액을 책임지고 대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매도인의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을"은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 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조합으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조합에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설계 도서상의 구조 방식이나 기초의 형식 등은 본 공사시 실제 지질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시공사 브랜드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성상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담보대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면적 합산, 확정 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시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 즉 손실, 벌금, 과태료, 모든 민·형사 및 행정적인 문제는 계약자 본인이 해결 및 비용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도시가스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의 가스공급을 위하여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식 지역정압실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을 하게 될 경우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청약 및 계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의 내용,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영구배수시스템, 수목,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 및 유지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 학교, 연결녹지, 공원 및 공공청사 시설은 시공사의 시공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분양홍보에 사용된 단지 모형,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CG(조감도, 배치도, 광역 위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단위 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 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 내용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안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단지 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서 대비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문주 및 기타 부속 시설물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조합으로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을 촬영한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홍보에 사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감재 외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 상품(가구 및 집기류 등)를 표현한 것입니다.

● 설계 일반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등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주동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세대도 세대가 속한 동, 층, 향,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경관계획(외관, 그래픽, 조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구매를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가구 등의 크기, 폭, 높이 등에 따라 배치가 불가하거나 복도면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기의 사유들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신고 등의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설계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등 수정
-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의 변경
- 현장 여건에 따른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위치 변경
- 각 세대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주방 싱크볼, 가스쿡탑, 김치냉장고장, 냉장고장 및 보일러 등의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의 변경
- 주방가구 수납공간, 싱크볼, 쿡탑, 김치냉장고, 냉장고장 위치, 크기 및 형태 등 변경
- 조경 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부대시설) 및 대지조성 계획(법면 또는 사면, 석축, 옹벽, 배수, 포장)의 위치, 디자인, 색채, 수량, 종류 등
-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채광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휀룸 등의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의 변경
-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 조경 식재, 조경 시설물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옥외 주민 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 분리 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해당 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과 방음벽 등 구조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 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 취향, 민원에 의한 설계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 외의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추가 설치, 교체, 위치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특기 시방서에 별도의 시공 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정 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씽크대, 주방가구, 신발장, 욕실 샤워부스 및 도기 하부 등 일부 공간은 바닥 난방이 제외됩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층・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 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동선, 기능・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아파트 건축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해 일부 조정되어 설계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부지는 도로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 또는 수림대가 설치될 수 있고, 시공, 시행자의 판단 또는 관할 시청, 구청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이를 설치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세대 내 대피공간의 면적은 벽체 중심선 기준과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별 MD계획은 미확정으로 향후 근린생활시설 분양시 MD 계획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주출입구 도로는 경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이 각 단지에 분산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원 등 녹지공간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위치는 미정임)

● 주변현황 / 단지배치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상가 주차장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 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 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완충녹지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시설 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식재 및 조경시설물, 급배기시설(환기구등), 천장,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조경, 조명 등의 변경에 따라 먼지, 소음 발생,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 층,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천공권 및 사생활권등이 일부 제한되거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및 계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의 내용,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조, 정화조, 제연휀룸 환기 시설, 실외기, 휴게 공간,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조경, 조명, 램프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B)가 건설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각 부대시설의 옥상 또는 인접 부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미관, 소음발생 등 일부 사생활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각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천창,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휀룸, 실외기, 환기구(D.A), 천창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천공권 및 사생활권 등이 일부 제한되거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본 공사시 변경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식재, 지상층 시설물, 동 출입구 형태,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는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 공용부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 방음벽(해당시)의 위치, 개수, 상세 계획(형태, 높이, 폭, 마감재, 컬러, 디자인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코어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코어의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며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하여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PC 적용 여부 및 부위는 본 공사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칼라 등 및 주차 구획의 개소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계단실은 적절한 환기가 시행되지 않으면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 폭을 포함하며, 본 공사시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되는 구간은 주차라인을 마킹하지 않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은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며, 입주민 전체가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하에 설치되는 세대창고의 가로, 세로 크기와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지하층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유효통과높이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차량 주차부 유효높이: 2.1m)
- PD, AV, EPS, TPS, S.T, AD, PIT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승강기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 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신축 줄눈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은 바닥 단차이가 있으며, 단차가 나는 부위에 차량 및 보행 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소방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설치 구간에는 수목식재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잔디 또는 초화류만 식재될 예정이며, 저층 세대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위성 안테나, 피뢰침, 저수조, 조명, 태양광 발전 설비, 인명 구조 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천공권 및 사생활권 등이 일부 제한되거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일부 주동에 한하여 주동의 하부에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 준하며, 사업 진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의 크기 및 진입 방법은 동 평면의 형상 및 배치에 따라 동별, 출입구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상부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 보행자 통로, 부대시설 등이 형성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 세대 및 인근 세대에 생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되어 환경권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의 높이, 필로티 개구부 크기 및 형태, 필로티 내부 천장 높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로 입면 및 옥탑 구조물의 형태가 상이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동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계단실 방화구획 조건 충족을 위해 망입 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홀, 계단실의 창은 개폐가 안되는 고정형 또는 자동 개폐 장치가 창의 위치 등에 따라 혼용되어 설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하부 부대복리시설 등 일부 마감은 지정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및 세대시공

※ 본 주택은 계약해제분 재판매분으로 견본주택은 철거하여 관람 불가하며, 당첨자에 한해 공사 중인 주택을 관람할 수 있으며, 향후 고객점검 시 주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사시 타일(현관 바닥, 거실 벽, 욕실 바닥 및 벽, 발코니 바닥, 주방 벽), 인조석(주방 상판 및 벽)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인조석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의 냉장고, 김치냉장고의 설치 공간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제품에 따라 설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또한, 온수분배기 가림막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거나 도장마감 처리되어 서랍, 문짝 혹은 빌트인 가전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가구, 가전 등)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하실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1(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에어컨 설치는 입주자 공사분),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물 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단차 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형 선택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미확장형 선택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미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미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발코니 미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 반침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9A 타입의 경우 다용도실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

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직배기 덕트가 실외기실을 통하여 계획됨에 따라 해당 덕트가 일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욕실 천장의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청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따라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고 해당 세대에서 상부 세대의 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상층부 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도어, 창호류의 사양(유리, 창틀 디자인, 손잡이, 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 방향, 디테일 등)과 위치 등은 사용 환경, 시공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각 실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 외벽 마감재에 따라 창호류의 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의 유리 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일부에는 입면 분할 프레임 창호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입면분할 프레임 창에는 별도의 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의 형태,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SK smart home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 smart home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SK smart home과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K smart home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TV폰 후면에 주방 TV폰 전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 시공됩니다.
- 계단실형 주동의 일부 세대는 대피공간 발코니 없이 세대간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복도형 주동 제외)
- 각 평형별 분전반 위치가 상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실 샤워부스 및 도기 하부 등 일부 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에는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 및 대피공간 또는 유사구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 저층부(3층 이하 일부 세대)를 제외한 세대 내의 대피 공간 및 유사 구조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등 난방 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재질은 결로, 단열 등에 대한 성능 향상 등을 사유로 본 공사시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의 폭, 높이, 깊이는 세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도면 기준)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농, 붙박이장 등)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 세대내 공사용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마감재 설치 전 폐쇄됩니다.
- 임대아파트의 설계는 사업의 진행 과정, 인허가청 등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의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계 / 전기 / 설비
- 아파트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는 주방 씽크 하부장에 설치되고, 급수급탕 분배기는 세대내 욕실 천정에 설치됩니다. 온수분배기 설치를 위한 하부장 타공으로 수납공간이 일부 제한되며, 급수급탕 분배기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욕실 천정에 설치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본 공사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승강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침실2 또는 침실3)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필로티 상부 세대는 욕실 오배수배관이 층상배관 공법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승강기 홀은 각 세대 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94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의무사항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기밀 성능은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인 제품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 차단 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일괄 소등 스위치 적용 (단위 세대 내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조명기기 중 안정기 내장형 램프, 형광 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 화장실 자동 점멸 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침실별 온도 조절 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대표번호 : 032-515-9961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시공회사명
상호명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스케이에코플랜트 ㈜	㈜ HJ중공업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81, 4층 (승지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법인등록번호	122-86-23006	101-81-34928	206-85-23758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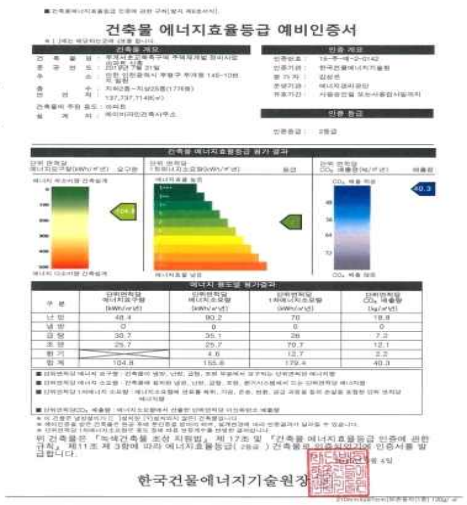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생건축 예비 인증서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